

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77,027,584	8,310,828
일반회계	247,563,332	7,426,900
특별회계	29,464,252	883,928
기타특별회계	29,464,252	883,928
상수도특별회계	12,122,277	363,66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36,245	22,08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457,476	43,72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22,274	15,668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14,494,753	434,84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01,835	3,055
기반시설특별회계	29,392	882

제 2 조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5,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10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10년도 사고이월사업은 별첨 "사고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7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610,58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직무수행경비
3. 법정 의무부담금(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